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개정(안)

2023. 11.



조달품질원
국 방 물 자 품 질 과

목 차

I. 개정 배경 및 주요 개정내용	3
1. 개정 배경	3
2. 주요 개정내용	5
II. 세부 개정내용	6
1. 절차 간소화 및 업무 최적화	6
2. 군수품 품질관리 강화	11
3. 기타사항	13
III. 추진 일정	17
붙임 : 신·구 조문 대비표	18

1

개정 배경

- 방위사업청의 국방상용물자 품질보증업무 이관(‘22.7.) 시 무기류 품질관리 위주의 기존 규정을 인용하여 상용물자 품질보증업무에 부적합한 부분 존재
- 품질보증업무 절차가 10단계 이상으로 중복·유사 절차 다수 존재
 - (중복) 계약문서 검토, 위험식별 및 평가, 정부품보계획 수립, 정부품보일지 작성의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 계약문서 검토 절차 중복
 - (유사) 위험식별 및 평가, 정부품보계획 수립 내용 유사
- 무기류 품질관리에 특화된 절차로 인해 영세 업체 부담 및 상용물자 품질보증업무 수행 시 효율성 저하
 - (영세 업체 부담) 프로세스 검토, 품질경영체계 평가* 절차는 별도의 품질관리 조직을 요구
 - * 국방품질경영체제(DQMS)의 품질보증형태별 요구사항에 대한 문서화 및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해당되는 경우 일부 자체 시험 가능. 특정 물품을 중장기적으로 납품하는 업체(무기류 등)의 지속적 품질관리에 적합
 - (무기류만 해당) 계약문서 검토 중 ‘수락시험 소요탄약, 파괴용 시료’ 등에 대한 평가는 무기류에만 적용
 - (상시 소요 발생) 상용물품의 상시 소요 발생으로 개별 품목의 품질보증형태 결정 위한 품질관리업무심의 필요
 - * 연간 소요 예정인 품목에 대한 품질보증형태 결정 위한 품질관리업무심의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무기류와 달리 상용물품은 상시로 소요 발생

□ 계약상대자 주도의 품질보증업무 절차로 적정성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

○ 계약상대자의 자체 품질관리에 대한 제품확인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공정성 문제 및 품질관리 어려움 존재

- (업체 검사 공정성) 업체 자체 품질검사 인정 범위가 관능검사, 이화학검사를 모두 포함하여 품질관리의 공정성 문제 제기
- (시정조치)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 및 품질관리 문제 발생 시 시정조치*로 보완 요청하며 별도 제재 조치(행정처분 등) 부재로 납품지체 다수 발생

* 정부품질보증 과정 중 규격 미준수, 품질관리 불량 등 계약 요구조건에 대한 위반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절차

2

주요 개정내용

① 상용물자 품질보증 중심으로 절차 간소화 및 업무 최적화

- (절차 간소화) 중복·유사 절차에 대한 통폐합 및 상용물자 품질관리에 불필요한 절차를 삭제하여 업무의 간소화
- (업무 최적화) 무기류 품질관리 관련 절차 중 활용 가능한 절차는 상용물자 품질관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범위 조정 및 개선

② 품질관리 주체별 업무 범위 명확화 및 시정조치 개선 통한 품질관리 강화

- (업무 범위 명확화) 업체 자체 품질검사 중 이화학검사는 전문적인 공인시험기관의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특수한 경우에만 업체 품질검사 인정
- (시정조치 개선) 중요 계약조건 위반, 반복적인 문제 발생 등 계약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행 어려운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치 실시

③ 기타사항

- (용어 명확화)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등 유관기관의 법령용어 검토 통해 불명확한 용어에 대해 정의(최초생산품, 시제품)
- (기준 부재 시 처리) 국방규격, 구매요구서의 샘플링 기준 부재 등 품질관리 기준 부재 시에 대한 품질보증업무 수행 방안 추가
- (납품지체 통보 간소화) 납품지체 예상 시 품질담당자 검토 후 계약부서 통보하는 절차를 품질원 및 계약부서에 동시 통보로 개선

1

절차 간소화 및 업무 최적화

□ 중복·유사 업무의 통폐합 통한 절차 간소화

- 정부품질보증 기본절차(제13조)의 위험식별 및 평가는 정부품보계획 수립(제17조)에서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 검토로 통합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정부품질보증 기본절차) 군수품에 대한 정부품질보증 기본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정부품질보증 준비 2. 업체품보계획서 검토 및 승인 3. 위험식별 및 평가 4. 정부품보계획 수립 5. 정부품질보증 실시(품질경영체제 평가, 프로세스 검토, 제품확인감사 및 시정조치) 6. 검사조서 발급 7. 위험추적 및 피드백 8. 품질정보관리 ⋮ (중략) ⋮	제13조(정부품질보증 기본절차) 군수품에 대한 정부품질보증 기본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정부품질보증 준비 2. 업체품보계획서 검토 및 승인 3. (삭제) 4. 정부품질보증계획 수립(위험식별 및 처리방안 검토, 정부품보계획서 작성) 5. 정부품질보증 실시(품질경영체제 평가, 프로세스 검토, 제품확인감사 및 시정조치) 6. 검사조서 발급 7. 위험추적 및 피드백 8. 품질정보관리 ⋮ (중략) ⋮
제17조(정부품보계획 수립) ① 담당공무원은 계약품목의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에 따라 정부품보계획서를 수립한다. 정부품보계획은 품질경영체제 평가, 프로세스 검토 및 제품확인감사 등을 포함하며, 위험 식별 및 평가결과에 따라 확인 범위와 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 (중략) ⋮	제17조(정부품보계획서 작성) ① 담당공무원은 계약품목의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에 따라 정부품보계획서를 작성한다. 정부품보계획은 품질경영체제 평가, 프로세스 검토 및 제품확인감사 등을 포함하며,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에 따라 확인 범위와 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 (중략) ⋮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2년차 이후에는 정부품보계획을 새로 작성하지 않고 위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기존의 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2년차 이후에는 정부품보계획을 새로 작성하지 않고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 결과를 반영하여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기존의 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 계약문서 검토(제14조)의 위험식별 내용 삭제

- 계약문서 검토, 정부품질보증 수립 단계에서 중복되는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 검토는 정부품질보증 수립에서만 수행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정부품질보증 준비)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부품질보증을 준비한다. ∴ (중략) ∴	제14조(정부품질보증 준비)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부품질보증을 준비한다. ∴ (중략) ∴
2. 계약문서의 검토 가. 담당공무원은 계약문서에 대해 제16조에 따라 해당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여 '계약문서검토(위험식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략) ∴	2. 계약문서의 검토 가. 담당공무원은 계약문서에 대해 '계약문서검토서'를 작성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 항목으로 한다. 다만 담당공무원은 업체나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항목을 가감할 수 있다. ∴ (중략) ∴
나. 담당공무원은 계약 품목에 관한 품질이력과 기술자료를 검토하여 정부품질보증의 위험요소가 예상될 경우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에 따라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나. 담당공무원은 계약 품목에 관한 품질이력과 기술자료를 검토하여 정부품질보증의 위험요소가 예상될 경우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 상용물자 품질관리 중심으로 업무 최적화

- 품질보증형태 검토(제5조) 내용에 대한 최종 확정 주체를 담당과장(국방물자품질과장)으로 변경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품질보증형태 검토) ① 담당공무원은 품질보증기관이 조달청으로 확정된 군수품의 품질보증형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 1. 정부품질보증 수행결과 및 품목의 특성을 참고하여 품질보증형태를 검토한 후 품질관리업무심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제5조(품질보증형태 검토) ① 담당공무원은 품질보증기관이 조달청으로 확정된 군수품의 품질보증형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 1. 정부품질보증 수행결과 및 품목의 특성을 참고하여 품질보증형태를 검토한 후 담당과장이 결정한다.

- 계약문서 검토(제14조)의 불필요한 검토(무기류 관련 사항) 제외

- 담당자가 품목 특성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계약문서 검토 내용 선택 가능하도록 개선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정부품질보증 준비)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부품질보증을 준비한다. : (중략) : 2. 계약문서의 검토 가. 담당공무원은 계약문서에 대해 제16조에 따라 해당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여 '계약문서검토(위험식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4조(정부품질보증 준비)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부품질보증을 준비한다. : (중략) : 2. 계약문서의 검토 가. 담당공무원은 계약문서에 대해 '계약문서검토서'를 작성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 항목으로 한다. 다만 담당공무원은 업체나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항목을 가감할 수 있다.

○ 위험식별 및 평가(제16조) 중 불필요한 위험등급 평가 삭제

- 안전도, 발생 가능성 등 위험등급을 평가하는 매트릭스 분석은
상용물자 품질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해당 부분 삭제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위험식별 및 평가) ① 위험식별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한다. ⋮ (중략) ⋮ ② 담당공무원은 위험식별 항목별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해당내용을 기록한다. 다만, 계약정보에 대한 위험식별은 제14조에 따른다. ③ 위험평가는 식별된 위험의 발생가능성과 발생 시 사용자의 안전 또는 군수품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결과)에 따라 위험의 등급을 분류하는 활동으로 그 정도에 따라 고, 중, 저위험으로 분류한다. ④ 위험평가는 식별된 위험에 대해 위험 발생가능성 및 영향(결과)의 정도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중략) ⋮ ⑤ 위험등급은 제1항에 따라 식별된 위험에 대한 발생가능성 및 영향(결과)의 정도가 정해지면, 이를 기초로 [별표 제2호] "위험등급 평가 매트릭스"에 의하여 고, 중, 저위험으로 결정한다. ⑥ 담당공무원은 위험에 대한 등급이 결정되면 위험통제(Risk Control) 또는 위험회피(Risk Avoidance)등 위험관리 방법을 정하고 해당 관리방법에 따라 조치한다. ⋮ (중략) ⋮ ⑦ 동일업체에서 동일품목을 계약한 경우에는 기 평가된 내용을 활용할 수 있고, 유사품목류는 대표품목을 정하여 위험식별 및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⑧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최초 위험평가 수행 후 6개월 단위로 재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부품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위험식별 및 처리방안 검토) ① 위험식별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한다. ⋮ (중략) ⋮ ② 담당공무원은 위험식별 항목별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해당내용을 기록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담당공무원은 위험식별 항목별로 위험통제(Risk Control) 또는 위험회피(Risk Avoidance)등 위험관리 방법을 정하고 해당 관리방법에 따라 조치한다. ⋮ (중략) ⋮ ⑦ 동일업체에서 동일품목을 계약한 경우에는 기 식별 및 처리된 내용을 활용할 수 있고, 유사품목류는 대표품목을 정하여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 ⑧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최초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 검토 후 6개월 단위로 재검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부품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품질경영체제 평가(제18조)의 대상 범위 조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품질경영체제 평가) ① 업체 품질경영체제 평가는 품질보증형태별로 [별표 제1호] "국방품질경영체제(KDS 0050-9000)실행 조건표" 요구사항에 대한 문서화 및 이행여부에 대하여 평가한다. ⋮ (중략) ⋮ ④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체의 경우에는 인증심사 결과 취약요소(부적합, 관찰사항) 사항만 평가한다.	제18조(품질경영체제 평가) ① 업체 품질경영체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품질보증형태별로 [별표 제1호] "국방품질경영체제(KDS 0050-9000)실행 조건표" 요구사항에 대한 문서화 및 이행여부에 대하여 평가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화학시험 및 측정 등을 업체 자체 시험시설 또는 협력업체의 시험시설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2. 규격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3. 그 밖에 조달품질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 (중략) ⋮ ④ 담당공무원은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체를 포함한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KS 및 조달물품 품질보증 인증, HACCP 인증 등 공인된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 인증서를 제출받아 품질경영체제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 프로세스 검토(제19조)의 대상 범위 조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프로세스 검토) ① 프로세스 검토는 [별표 제3호]에 따라 검토한다. ② 프로세스 검토는 정부품보계획에 따라 선정된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프로세스에 따라 적절한 방법 및 심도 등을 정하여 수행하고, 수행내용 및 결과는 정부품질보증일지에 기록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선정된 프로세스 검토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프로세스 검토를 통하여 품질개선 활동을 실시한다.	제19조(프로세스 검토) ① 프로세스 검토는 [별표 제3호]에 따라 검토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 프로세스에 대해 적절한 방법 및 심도 등을 정하여 프로세스 검토를 수행하고, 수행내용 및 결과는 정부품질보증일지에 기록한다. 1. 신규 계약업체 또는 하자, 법규위반, 시정조치 이력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여 별도 품질관리가 필요한 경우 2. 규격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3. 그 밖에 조달품질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③ 담당공무원은 프로세스 검토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프로세스 검토를 통하여 품질개선 활동을 실시한다.

2

군수품 품질관리 강화

□ 업체 자체 품질검사 범위 명확화

○ 외부기관 시험의뢰(제23조) 범위 구체화

- 제품확인감사 대상 외 품목(품질보증형태 I형)에 대해서도 이화학시험은 공인시험기관 의뢰를 원칙으로 하여 시험결과에 대한 공정성 확보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외부기관 시험의뢰) ① 계약상대자는 자체 품질확인 시 자체 시설 또는 인력으로 제품의 성능 및 품질확인이 불충분할 경우, 해당시험을 공인시험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외부기관 시험의뢰) ① 계약상대자는 자체 품질확인 시 자체 시설 또는 인력으로 제품의 성능 및 품질확인이 불충분할 경우, 해당시험을 공인시험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이화학시험은 공인시험기관 등 외부기관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시정조치 개선

○ 시정조치(제21조) 단계별 적용 범위 명확화 통한 품질관리 강화

- 계약상대자 귀책 유무에 대한 시정조치 구분* 및 시정조치(제3방법) 불이행 시 계약부서 즉시 통보(제4방법)하여 즉각 조치 가능

* 계약상대자 귀책사유 없음 또는 경미(제2방법), 귀책사유 중대(제3방법) 구분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시정조치) ⑤ 시정조치 방법은 시정조치 요구내용의 중요성 및 시정조치 빈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4가지로 분류되며, ⋮ (중략) ⋮ 2. 제 2 방법 현장에서 결함에 대한 원인을 즉시 제거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문서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사항을 요구한다. 가. 미흡한 업체 품보계획서의 보완 요구 나. 계약상대자 품질경영체제 평가 및 프로세스 검토 결과 시정요구사항 다. 정부 제품확인감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준비미흡 및 발견된 규격불일치품의 결함시정 라. 제1방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제 3 방법 중요품질 문제에 대하여 결함 및 원인의 제거를 요구하는 시정조치로서, 담당공무원은 문서로 계약상대자의 대표자에게 통보하며 그 해당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중요한 품질결함 사항 나. 제출하여야 할 업체 품보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반복되는 동일한 품질결함의 시정 라. 제2방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제 4 방법 계약요구조건에 일치하는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업체가 품질보증 노력이 없어 제품 품질보증이 어려울 경우 또는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사항(단순 행정착오 등 제외)을 발견하였을 경우의 시정조치로서, 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계약건에 대한 모든 품질보증활동의 일시 중단을 통보하고, 계약이행 불가사항을 검토하여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제21조(시정조치) ⑤ 시정조치 방법은 시정조치 요구내용의 중요성 및 시정조치 빈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4가지로 분류되며, ⋮ (중략) ⋮ 2. 제 2 방법 현장에서 결함에 대한 원인을 즉시 제거할 수 없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경미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문서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사항을 요구한다. 가. 미흡한 업체 품보계획서의 보완 요구 나. 계약상대자 품질경영체제 평가 및 프로세스 검토 결과 시정요구사항 다. 정부품질보증 기본절차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준비미흡 및 발견된 규격불일치품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결함시정 라. 제1방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제 3 방법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중대한 품질문제에 대한 결함 및 원인의 제거를 요구하는 시정조치로서, 담당공무원은 문서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며 그 해당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품질결함 사항 나. 제출하여야 할 업체 품보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반복되는 동일 또는 유사한 품질결함의 시정 라. 제2방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제 4 방법 계약요구조건에 일치하는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3방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업체가 품질보증 노력이 없어 제품 품질보증이 어려울 경우 또는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사항(단순 행정착오 등 제외)을 발견하였을 경우의 시정조치로서, 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계약 건에 대한 모든 품질보증활동의 일시 중단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따른 계약이행 불가사항을 검토하여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 용어 명확화

○ ‘시제품’ 과 ‘최초생산품’ 구분 정의(제2조)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중략)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중략) ∴
19. '시정조치'란 정부품질보증 과정 중 발견되는 불합리한 사항 및 규정위반 사항 또는 계약 조건에 위배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을 말한다.	19. '시정조치'란 정부품질보증 과정 중 발견되는 불합리한 사항 및 규정위반 사항 또는 계약 조건에 위배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을 말한다.
20. '시험'이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품질특성 또는 성능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중략) ∴	20. '시제품'이란 계약 또는 납품물량과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생산한 동일 또는 유사한 품목의 시험 제작된 제품을 말한다.
27. '최초생산품'이란 업체가 신규로 계약하여 최초로 생산하는 물량을 말한다. ∴ (후략) ∴	21. '시험'이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품질특성 또는 성능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중략) ∴
	28. '최초생산품'이란 계약상대자가 신규로 계약체결 또는 소요군의 납품요구에 따라 계약 또는 납품물량의 양산 전에 최초로 생산하는 물량을 말한다. ∴ (후략) ∴

□ 기준 부재 시 처리

○ 정부품질보증계획 수립(제17조) 단계에서 샘플링 기준 부재 시에 대한 처리방안 추가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정부품질보증계획 수립) ② 담당공무원은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부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하며, 필요시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품질보증계획서를 확정할 수 있다. ⋮ (중략) ⋮ 다. 제품확인감사 1) 제품확인감사 계획은 감사대상품목 선정, 제품감사 시 적용규격, 감사 방법 및 내용, 샘플링 방법 등을 포함한다. 2) 샘플링은 로트로 생산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별표 제5호] "샘플링 수행 기준"에 따른다.	제17조(정부품질보증계획서 작성) ②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부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하며, 필요시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품질보증계획서를 확정할 수 있다. ⋮ (중략) ⋮ 3. 제품확인감사 가. 제품확인감사 계획은 감사대상품목 선정, 제품감사 시 적용규격, 감사 방법 및 내용, 샘플링 방법 등을 포함한다. 나. 샘플링은 로트로 생산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별표 제5호] "샘플링 수행 기준"에 따른다. 다만 그 기준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품목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하되 동등 또는 유사 품목의 기준과 동등 이상 수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납품지체 통보 간소화

- 업체의 납품지체(예상) 통보(제26조) 시 품질원 및 계약부서에 동시 통보하도록 개선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납품지체 (예상) 통보) 계약상대자는 불량발생, 수입지연 등의 사유로 계획된 생산 일정이 지켜지지 않아 납기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사유를 명시하여 조달품질원장에게 통보하고, 담당공무원은 납품지체(예상)통보서를 작성하여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제26조(납품지체 (예상) 통보) 계약상대자는 불량발생, 수입지연 등의 사유로 계획된 생산 일정이 지켜지지 않아 납기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사유를 명시한 납품지체(예상)통보서를 작성하여 조달품질원장과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 유관기관(계약부서, 방위사업청 등) 요청사항 반영 및 기타 사항

- 생산능력 확인(제9조) 시 시제품 검사 대상품목의 검사 방법을 명시
 - 기준서에 시제품 검사 방법 부재로 일부 사례에서 논란 발생하여 개선 대책으로 반영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생산능력 확인) ③ 확인자는 제7조제1호의 생산·정비공장 등록 주소지에서 확정된 최신 기준서의 내용에 따라 업체의 생산·검사설비 및 기술자력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제8조(생산능력 확인) ③ 확인자는 제7조제1호의 생산·정비공장 등록 주소지에서 확정된 최신 기준서의 내용에 따라 업체의 생산·검사설비 및 기술자력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다만, 시제품 검사대상품목의 이화학시험 및 측정 등이 기준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에 따라 실시하며, 필요시 업체가 자체적으로 시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규격불일치품(제22조) 발생 시 계약서 또는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

- 군수품 계약 특수조건 제·개정 시 물품 특성에 따라 감가(섬유류) 또는 감액(그 외) 구분 적용 예정으로 관련 내용 추가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규격불일치품) ② 규격불일치품은 원칙적으로 수락될 수 없다. 다만, 규격불일치품이라 하더라도 경제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형상관리부서(방위사업청, 각 군)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표준화 업무지침」에 따라 형상관리부서의 규격완화 또는 면제 처리 결과에 따를 수 있다.	제22조(규격불일치품) ② 규격불일치품은 원칙적으로 수락될 수 없다. 다만, 규격불일치품이라 하더라도 경제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형상관리부서(방위사업청, 각 군)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표준화 업무지침」에 따라 형상관리부서의 규격완화 또는 면제 처리 결과에 따를 수 있으며, 계약서 또는 계약 특수조건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 해당 조건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선납후검(제32조) 요청 주체 변경

- 군수품 계약 특수조건에 선납후검 요청 주체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명시되어 이를 반영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선납후검) ① 군의 긴급소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품질원장의 제품 합격 판정 이전에 납품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납품 기간 내에 확인할 수 없는 시험항목 등에 대한 사후 제품확인감사를 위해 시료 채취 후 납품 조치한다.	제32조(선납후검) ① 군의 긴급소요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조달품질원장의 제품 합격 판정 이전에 납품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납품 기간 내에 확인할 수 없는 시험항목 등에 대한 사후 제품확인감사를 위해 시료 채취 후 납품 조치한다.

○ 기타 오기 수정 및 예시 추가 등

☐ 추진 경과

- 관계기관 개정(안) 사전 의견 조회 : '23. 8. 22. ~ 9.5.
- 행정예고, 변호사 자문, 전 부서 의견 조회 : '23. 9. 19. ~ 10.10.
- 국무조정실 사전 규제심사 대상 의뢰 : '23. 9. 21. ~ 9.27. - 비대상
- 국민생각함 의견 수렴 : '23. 9. 26. ~ 10.10. - 별도 의견없음

☐ 향후 일정

- 개정(안) 심사(계약심사협의회) : '23. 11월
- 각 소관부서 및 유관기관 안내 : 개정 즉시
- 나라장터, 법령정보센터 등 개정 내용 등록 : 개정 즉시

☐ 시행 시기

- 시행일 이후 즉시 적용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중략)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중략) ∷
19. '시정조치'란 정부품질보증 과정 중 발견되는 불합리한 사항 및 규정위반 사항 또는 계약 조건에 위배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을 말한다.	19. '시정조치'란 정부품질보증 과정 중 발견되는 불합리한 사항 및 규정위반 사항 또는 계약 조건에 위배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을 말한다.
20. '시험'이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품질특성 또는 성능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중략) ∷	20. '시제품'이란 계약 또는 납품물량과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생산한 동일 또는 유사한 품목의 시험 제작된 제품을 말한다.
21. '시험'이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품질특성 또는 성능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중략) ∷	21. '시험'이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품질특성 또는 성능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중략) ∷
27. '최초생산품'이란 업체가 신규로 계약하여 최초로 생산하는 물량을 말한다. ∷ (후략) ∷	28. '최초생산품'이란 계약상대자가 신규로 계약체결 또는 소요군의 납품요구에 따라 계약 또는 납품물량의 양산 전에 최초로 생산하는 물량을 말한다. ∷ (후략) ∷
제5조(품질보증형태 검토) ① 담당공무원은 품질보증기관이 조달청으로 확정된 군수품의 품질보증형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	제5조(품질보증형태 검토) ① 담당공무원은 품질보증기관이 조달청으로 확정된 군수품의 품질보증형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
1. 정부품질보증 수행결과 및 품목의 특성을 참고하여 품질보증형태를 검토한 후 품질관리업무심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 (후략) ∷	1. 정부품질보증 수행결과 및 품목의 특성을 참고하여 품질보증형태를 검토한 후 담당 과장이 결정한다. ∷ (후략) ∷

제8조(생산능력 확인) ① 업체 생산능력 확인자(이하 "확인자"라 한다)는 2명이상 1개조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중략) ⋮ ③ 확인자는 제7조제1호의 생산·정비공장 등록 주소지에서 확정된 최신 기준서의 내용에 따라 업체의 생산·검사설비 및 기술자력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 (후략) ⋮	제8조(생산능력 확인) ① 업체 생산능력 확인자(이하 "확인자"라 한다)는 2명이상 1개조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중략) ⋮ ③ 확인자는 제7조제1호의 생산·정비공장 등록 주소지에서 확정된 최신 기준서의 내용에 따라 업체의 생산·검사설비 및 기술자력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다만, 시제품 검사대상품목의 이화학시험 및 측정 등이 기준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에 따라 실시하며, 필요시 업체가 자체적으로 시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후략) ⋮
제12조(품질보증형태별 정부품질보증) 담당공무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품질보증형태별 계약상대자 이행사항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부품질보증을 수행한다. 1. 단순품질보증형(I형) 담당공무원은 업체가 제출한 품질보증 증빙서류(품질보증서 및 자체 또는 공인기관 최종 제품(성능) 검사/시험성적서)가 계약요구조건에 일치될 경우 검사조서를 발급한다. 다만, 계약부서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부품질보증 강화를 요구하거나 조달품질원장이 정부품질보증의 필요성을 제기할 경우 담당공무원은 제품확인감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제14조제2호에 따른 계약문서 검토 시 업체별 위험요소(하자, 법규위반 등)를 고려하여 강화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2. 선택품질보증형(II형) 담당공무원은 별도의 정부품질보증은 생략하고 업체가 제출한 품질보증 증빙서류 (품질보증서 및 자체 또는 공인기관 최종 제품(성능) 검사/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계약요구조건에 일치될 경우 검사조서를 발급한다.	제12조(품질보증형태별 정부품질보증) 담당공무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품질보증형태별 계약상대자 이행사항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부품질보증을 수행한다. 1. 단순품질보증형(I형) 담당공무원은 업체가 제출한 품질보증 증빙서류(품질보증서 및 자체 또는 공인기관 최종 제품(성능) 검사/시험성적서)가 계약요구조건에 일치될 경우 검사조서를 발급한다. 다만, 계약부서 또는 방위사업청장(소요군 포함)이 정부품질보증 강화를 요구하거나 조달품질원장이 정부품질보증의 필요성을 제기할 경우 담당공무원은 제품확인감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제14조제2호에 따른 계약문서 검토 시 업체별 위험요소(하자, 법규위반 등)를 고려하여 강화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2. 선택품질보증형(II형) 담당공무원은 별도의 정부품질보증은 생략하고 업체가 제출한 품질보증 증빙서류 (품질보증서 및 자체 또는 공인기관 최종 제품(성능) 검사/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계약요구조건에 일치될 경우 검사조서를 발급한다.

3. 표준품질보증형(Ⅲ형), 체계품질보증형(Ⅳ형) 가. 담당공무원은 위험식별 및 평가 결과를 기본으로 정부품질보증계획(이하 "정부품질보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나. 담당공무원은 수립된 정부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정부품질보증을 실시한다. 다. 담당공무원은 정부품질보증 중에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해서 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제13조(정부품질보증 기본절차) 군수품에 대한 정부품질보증 기본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정부품질보증 준비 2. 업체품질보증계획서 검토 및 승인 3. 위험식별 및 평가 4. 정부품질보증계획 수립 5. 정부품질보증 실시(품질경영체제 평가, 프로세스 검토, 제품확인감사 및 시정조치) 6. 검사조서 발급 7. 위험추적 및 피드백 8. 품질정보관리 제14조(정부품질보증 준비)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부품질보증을 준비한다. ⋮ (중략) ⋮ 2. 계약문서의 검토 가. 담당공무원은 계약문서에 대해 제16조에 따라 해당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여 '계약문서검토(위험식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략) ⋮ 나. 담당공무원은 계약 품목에 관한 품질이력과 기술자료를 검토하여 정부품질보증의 위험요소가 예상될 경우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에 따라 계약부서에	3. 표준품질보증형(Ⅲ형), 체계품질보증형(Ⅳ형) 가. 담당공무원은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 검토 결과를 기본으로 정부품질보증계획(이하 "정부품질보증계획"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여 정부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한다. 나. 담당공무원은 수립된 정부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정부품질보증을 실시한다. 다. 담당공무원은 정부품질보증 중에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해서 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제13조(정부품질보증 기본절차) 군수품에 대한 정부품질보증 기본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정부품질보증 준비 2. 업체품질보증계획서 검토 및 승인 3. (삭제) 4. 정부품질보증계획 수립(위험식별 및 처리방안 검토, 정부품질보증계획서 작성) 5. 정부품질보증 실시(품질경영체제 평가, 프로세스 검토, 제품확인감사 및 시정조치) 6. 검사조서 발급 7. 위험추적 및 피드백 8. 품질정보관리 제14조(정부품질보증 준비)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부품질보증을 준비한다. ⋮ (중략) ⋮ 2. 계약문서의 검토 가. 담당공무원은 계약문서에 대해 '계약문서검토서'를 작성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 항목으로 한다. 다만 담당공무원은 업체나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항목을 가감할 수 있다. ⋮ (중략) ⋮ 나. 담당공무원은 계약 품목에 관한 품질이력과 기술자료를 검토하여 정부품질보증의 위험요소가 예상될 경우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	---

통보한다. ⋮ (후략) ⋮ 제15조(업체품질보증계획서 접수) ① 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업체품질보증계획서를 접수하여 제11조에 의거 검토한다. ⋮ (후략) ⋮ 제16조(위험식별 및 평가) ① 위험식별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한다. 1. 계약문서 2. 연구개발자료 3. 기술자료목록 4. 업체품질보증계획서 5. 품질경영체제 문서 및 이행자료 6. 과거 계약이행 정보 7. 고객 운용 및 피드백 정보 8. 대외기관(방위사업청 등) 정부품질보증 강화 요청 9. 기타 필요한 자료 ② 담당공무원은 위험식별 항목별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해당내용을 기록한다. 다만, 계약정보에 대한 위험식별은 제14조에 따른다. ③ 위험평가는 식별된 위험의 발생가능성과 발생 시 사용자의 안전 또는 군수품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결과)에 따라 위험의 등급을 분류하는 활동으로 그 정도에 따라 고, 중, 저위험으로 분류한다. ④ 위험평가는 식별된 위험에 대해 위험 발생가능성 및 영향(결과)의 정도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위험발생 가능성 정도는 다음과 같이 5개 수준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가. 5수준 : 발생 가능성이 확실함.(매우 높음) 나. 4수준 :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음.(높음) 다. 3수준 :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 (후략) ⋮ 제15조(업체품질보증계획서 접수) ① 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업체품질보증계획서를 접수하여 제11조에 따라 검토한다. ⋮ (후략) ⋮ 제16조(위험식별 및 처리방안 검토) ① 위험식별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한다. 1. 계약문서 2. 연구개발자료 3. 기술자료목록 4. 업체품질보증계획서 5. 품질경영체제 문서 및 이행자료 6. 과거 계약이행 정보 7. 고객 운용 및 피드백 정보 8. 대외기관(방위사업청 등) 정부품질보증 강화 요청 9.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② 담당공무원은 위험식별 항목별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해당내용을 기록한다. ③ (삭제) ④ (삭제)
---	--

같음.(보통) 라. 2수준 : 발생 가능성이 아주 드물게 있을 것 같음.(낮음) 마. 1수준 :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음.(매우 낮음) 2. 위험발생 시 사용자의 안전 또는 군수품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결과) 정도는 다음과 같이 5개 수준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가. 5수준 : 위험의 영향(결과)이 사용자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사망)을 미치거나, 군수품의 성능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 나. 4수준 : 위험의 영향(결과)이 사용자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중상)을 미치거나, 군수품의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 다. 3수준 : 위험의 영향(결과)이 군수품의 성능에 부분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 라. 2수준 : 위험의 영향(결과)이 군수품의 부수적인 성능에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 마. 1수준 : 위험의 영향(결과)이 군수품의 사용 및 성능에 거의 영향이 없음. ⑤ 위험등급은 제1항에 따라 식별된 위험에 대한 발생가능성 및 영향(결과)의 정도가 정해지면, 이를 기초로 [별표 제2호] "위험등급 평가 매트릭스"에 의하여 고, 중, 저위험으로 결정한다. ⑥ 담당공무원은 위험에 대한 등급이 결정되면 위험통제(Risk Control) 또는 위험회피(Risk Avoidance)등 위험관리 방법을 정하고 해당 관리방법에 따라 조치한다. 1. 위험통제는 위험발생 가능성을 제거 또는 줄이는 방법이며, 처리방안은 식별된 위험요소 및 등급에 따라 품질경영체제 평가, 프로세스 검토, 제품확인감사등의 정부품질보증 방법 및 심도 등을 결정하고 고위험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품질보증 대상으로 선정한다. 2. 위험회피는 위험발생 가능성을 제거하는 방법이며, 처리방안은 식별된 위험요소를 계약부서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토록 한다. ⑦ 동일업체에서 동일품목을 계약한 경우에는 기 평가된 내용을 활용할 수 있고,	⑤ (삭제) ⑥ 담당공무원은 위험식별 항목별로 위험통제(Risk Control) 또는 위험회피(Risk Avoidance) 등 위험관리 방법을 정하고 해당 관리방법에 따라 조치한다. 1. 위험통제는 위험발생 가능성을 제거 또는 줄이는 방법이며, 처리방안은 식별된 위험요소 및 등급에 따라 품질경영체제 평가, 프로세스 검토, 제품확인감사등의 정부품질보증 방법 및 심도 등을 결정하고 고위험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품질보증 대상으로 선정한다. 2. 위험회피는 위험발생 가능성을 제거하는 방법이며, 처리방안은 식별된 위험요소를 계약부서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토록 한다. ⑦ 동일업체에서 동일품목을 계약한 경우에는 기 식별 및 처리된 내용을 활용할 수 있고,
---	--

유사품목류는 대표품목을 정하여 위험식별 및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⑧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최초 위험평가 수행 후 6개월 단위로 재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부품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⑨ 담당공무원은 계약품목에 대한 위험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담당공무원의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정부품질보증계획 수립) ① 담당공무원은 계약품목의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에 따라 정부품보계획서를 수립한다. 정부품보계획은 품질경영체제 평가, 프로세스 검토 및 제품확인감사 등을 포함하며, 위험 식별 및 평가결과에 따라 확인 범위와 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담당공무원은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부품보계획서를 작성하며, 필요시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품보계획서를 확정할 수 있다. 1. 표지 2.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 [별지 제6호] 서식 3. 정부품질보증 대상(위험식별 및 평가결과에 따라 범위 조정) 가. 품질경영체제 평가 품질경영체제 평가대상 선정, 평가주기 또는 시기 등 나. 프로세스 검토 대상 프로세스 선정, 시기 및 방법 등 다. 제품확인감사 1) 제품확인감사 계획은 감사대상품목 선정, 제품감사 시 적용규격, 감사 방법 및 내용, 샘플링 방법 등을 포함한다. 2) 샘플링은 로트로 생산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별표 제5호] "샘플링 수행 기준"에 따른다. ③ 승인된 정부품보계획은 정부품질보증 수행 중 위험요소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국가재난 또는 천재지변으로 계약상대자 방문이 어려운	유사품목류는 대표품목을 정하여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 ⑧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최초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 검토 후 6개월 단위로 재검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부품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⑨ 담당공무원은 계약품목에 대한 위험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담당공무원의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정부품보계획서 작성) ① 담당공무원은 계약품목의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에 따라 정부품보계획서를 작성한다. 정부품보계획은 품질경영체제 평가, 프로세스 검토 및 제품확인감사 등을 포함하며,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에 따라 확인 범위와 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부품보계획서를 작성하며, 필요시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품보계획서를 확정할 수 있다. 1. 품질경영체제 평가 품질경영체제 평가대상 선정, 평가주기 또는 시기 등 2. 프로세스 검토 대상 프로세스 선정, 시기 및 방법 등 3. 제품확인감사 가. 제품확인감사 계획은 감사대상품목 선정, 제품감사 시 적용규격, 감사 방법 및 내용, 샘플링 방법 등을 포함한다. 나. 샘플링은 로트로 생산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별표 제5호] "샘플링 수행 기준"에 따른다. 다만 그 기준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품목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하되 동등 또는 유사 품목의 기준과 동등 이상 수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승인된 정부품보계획은 정부품질보증 수행 중 위험요소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국가재난 또는 천재지변으로 계약상대자 방문이 어려운
---	--

경우 담당 과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④ 품질보증형태 I형의 경우 12조제1호 사유로 현장 정부품질보증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품보계획 수립을 생략한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2년차 이후에는 정부품보계획을 새로 작성하지 않고 위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기존의 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제18조(품질경영체제 평가) ① 업체 품질경영체제 평가는 품질보증형태별로 [별표 제1호] "국방품질경영체제(KDS 0050-9000)실행 조건표" 요구사항에 대한 문서화 및 이행여부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업체가 제출한 품질경영체제 문서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며, 미흡한 사항은 제21조제5항에 따라 업체에 보완을 요구한다. ③ 품질경영체제 평가의 세부사항은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규정"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되, 정부품질보증 과정 중 발견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당되는 항목을 부분적으로 평가하며, 미흡한 사항은 제21조제5항에 따라 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④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체의 경우에는 인증심사 결과 취약요소(부적합, 관찰사항) 사항만 평가한다. ⑤ 담당공무원은 품질경영체제 미 수립업체	경우 담당 과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④ 품질보증형태 I형의 경우 12조제1호 사유로 현장 정부품질보증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품보계획 수립을 생략한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2년차 이후에는 정부품보계획을 새로 작성하지 않고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기존의 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제18조(품질경영체제 평가) ① 업체 품질경영체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품질보증형태별로 [별표 제1호] "국방품질경영체제(KDS 0050-9000)실행 조건표" 요구사항에 대한 문서화 및 이행여부에 대하여 평가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화학시험 및 측정 등을 업체 자체 시험시설 또는 협력업체의 시험시설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2. 규격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3. 그 밖에 조달품질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② 담당공무원은 업체가 제출한 품질경영체제 문서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며, 미흡한 사항은 제21조제5항에 따라 업체에 보완을 요구한다. ③ 품질경영체제 평가의 세부사항은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규정"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되, 정부품질보증 과정 중 발견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당되는 항목을 부분적으로 평가하며, 미흡한 사항은 제21조제5항에 따라 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④ 담당공무원은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체를 포함한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KS 및 조달물품 품질보증 인증, HACCP 인증 등 공인된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 인증서를 제출받아 품질경영체제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담당공무원은 품질경영체제 미 수립업체
---	---

또는 납기촉박 계약으로 계약 납기 내 품질경영체제 수립(평가)이 불가한 경우에는 업체의 품질경영체제가 조기에 수립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고, 업체 품질경영체제 수립 이전에도 제품확인감사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프로세스 검토) ① 프로세스 검토는 [별표 제3호]에 따라 검토한다. ② 프로세스 검토는 정부품보계획에 따라 선정된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프로세스에 따라 적절한 방법 및 심도 등을 정하여 수행하고, 수행내용 및 결과는 정부품질보증일지에 기록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선정된 프로세스 검토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프로세스 검토를 통하여 품질개선 활동을 실시한다. 제20조(제품확인감사) ① 담당공무원은 정부품보계획에 포함된 대상(또는 항목)과 방법에 따라 제품확인감사를 실시하며 이화학시험 및 측정 등은 제24조의 절차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획된 생산일정에 따라 자체 검사결과 합격된 제품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품확인감사를 받아야 한다. ⋮ (중략) ⋮ 2. 최초생산품 제품확인감사 ⋮ (중략) ⋮ 나. 담당공무원은 계약규격에 따라 최초생산품에 대한 제품확인감사를 실시하며,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또는 납기촉박 계약으로 계약 납기 내 품질경영체제 수립(평가)이 불가한 경우에는 업체의 품질경영체제가 조기에 수립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고, 업체 품질경영체제 수립 이전에도 제품확인감사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프로세스 검토) ① 프로세스 검토는 [별표 제3호]에 따라 검토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 프로세스에 대해 적절한 방법 및 심도 등을 정하여 프로세스 검토를 수행하고, 수행내용 및 결과는 정부품질보증일지에 기록한다. 1. 신규 계약업체 또는 하자, 법규위반, 시정조치 이력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여 별도 품질관리가 필요한 경우 2. 규격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3. 그 밖에 조달품질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③ 담당공무원은 프로세스 검토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프로세스 검토를 통하여 품질개선 활동을 실시한다. 제20조(제품확인감사) ① 담당공무원은 정부품보계획에 포함된 대상(또는 항목)과 방법에 따라 제품확인감사를 실시하며 이화학시험 및 측정 등은 제24조의 절차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획된 생산일정에 따라 자체 검사결과 합격된 제품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품확인감사를 받아야 한다. ⋮ (중략) ⋮ 2. 최초생산품 제품확인감사 ⋮ (중략) ⋮ 나. 담당공무원은 계약규격에 따라 최초생산품에 대한 제품확인감사를 실시하며,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	--

1) 품질 충족여부 2) 생산장비, 치공구, 시설 및 시험장비 등의 완비여부 3) 자동시험장비를 포함한 시험 및 측정장비의 유효성과 검교정 체계 ∴ (후략) ∴ 제21조(시정조치) ① 담당공무원은 정부품질보증 과정 중 발견되는 불합리한 사항 및 규정위반 사항 또는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 결과는 기록·관리한다. ∴ (중략) ∴ ⑤ 시정조치 방법은 시정조치 요구내용의 중요성 및 시정조치 빈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4가지로 분류되며, 시정조치 요청 사유, 발생일자, 회신기간 등을 정하여 요구하며 납품품목에 해당되는 사항은 납품전까지 시정이 완료되어야 한다. 1. 제 1 방법 현장에서 즉시 결함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법으로서, 담당공무원은 구두로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고 요구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를 "정부품질보증일지"에 기록 유지한다. 2. 제 2 방법 현장에서 결함에 대한 원인을 즉시 제거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문서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사항을 요구한다. 가. 미흡한 업체 품보계획서의 보완 요구 나. 계약상대자 품질경영체제 평가 및 프로세스 검토 결과 시정요구사항 다. 정부 제품확인감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준비미흡 및 발견된 규격불일치품의 결함시정 라. 제1방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1) 품질 충족여부 2) 생산장비, 설치공구, 시설 및 시험장비 등의 완비여부 3) 자동시험장비를 포함한 시험 및 측정장비의 유효성과 검교정 체계 ∴ (후략) ∴ 제21조(시정조치) ① 담당공무원은 정부품질보증 과정 중 발견되는 불합리한 사항 및 규정위반 사항 또는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 결과는 기록·관리한다. ∴ (중략) ∴ ⑤ 시정조치 방법은 시정조치 요구내용의 중요성 및 시정조치 빈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4가지로 분류되며, 시정조치 요청 사유, 발생일자, 회신기간 등을 정하여 요구하며 납품품목에 해당되는 사항은 납품전까지 시정이 완료되어야 한다. 1. 제 1 방법 현장에서 즉시 결함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법으로서, 담당공무원은 구두로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고 요구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를 "정부품질보증일지"에 기록 유지한다. 2. 제 2 방법 현장에서 결함에 대한 원인을 즉시 제거할 수 없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경미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문서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사항을 요구한다. 가. 미흡한 업체 품보계획서의 보완 요구 나. 계약상대자 품질경영체제 평가 및 프로세스 검토 결과 시정요구사항 다. 정부품질보증 기본절차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준비미흡 및 발견된 규격불일치품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결함시정 라. 제1방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	---

않을 경우 3. 제 3 방법 중요품질 문제에 대하여 결함 및 원인의 제거를 요구하는 시정조치로서, 담당공무원은 문서로 계약상대자의 대표자에게 통보하며 그 해당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중요한 품질결함 사항 나. 제출하여야 할 업체 품보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반복되는 동일한 품질결함의 시정 라. 제2방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제 4 방법 계약요구조건에 일치하는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업체가 품질보증 노력이 없어 제품 품질보증이 어려울 경우 또는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사항(단순 행정착오 등 제외)을 발견하였을 경우의 시정조치로서, 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계약건에 대한 모든 품질보증활동의 일시 중단을 통보하고, 계약이행 불가사항을 검토하여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⑥ 급식류의 경우 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5항과는 별도로 [별표 제6호]와 같은 계약조건 위반사항이 발생할 때에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별지 제8호] 서식을 발부하고, 계약부서에 경고장 발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특수조건에 조달품질원이 경고장 발부 가능한 것으로 명시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22조(규격불일치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원자재, 제조 프로세스, 제품의 특성이 계약 기술요구조건과 일치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규격불일치품 생산과 위조부품 사용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규격불일치품은 원칙적으로 수락될 수 없다. 다만, 규격불일치품이라 하더라도	않을 경우 3. 제 3 방법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중대한 품질문제에 대한 결함 및 원인의 제거를 요구하는 시정조치로서, 담당공무원은 문서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며 그 해당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품질결함 사항 나. 제출하여야 할 업체 품보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반복되는 동일 또는 유사한 품질결함의 시정 라. 제2방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제 4 방법 계약요구조건에 일치하는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3방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업체가 품질보증 노력이 없어 제품 품질보증이 어려울 경우 또는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사항(단순 행정착오 등 제외)을 발견하였을 경우의 시정조치로서, 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계약 건에 대한 모든 품질보증활동의 일시 중단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따른 계약이행 불가사항을 검토하여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⑥ 급식류의 경우 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5항과는 별도로 [별표 제6호]와 같은 계약조건 위반사항이 발생할 때에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별지 제8호] 서식을 발부하고, 계약부서에 경고장 발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특수조건에 조달품질원이 경고장 발부 가능한 것으로 명시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22조(규격불일치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원자재, 제조 프로세스, 제품의 특성이 계약 기술요구조건과 일치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규격불일치품 생산과 위조부품 사용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규격불일치품은 원칙적으로 수락될 수 없다. 다만, 규격불일치품이라 하더라도
---	--

경제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형상관리부서(방위사업청, 각 군)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표준화 업무지침」에 따라 형상관리부서의 규격완화 또는 면제 처리 결과에 따를 수 있다. ⋮ (후략) ⋮ 제23조(외부기관 시험의뢰) ① 계약상대자는 자체 품질확인 시 자체 시설 또는 인력으로 제품의 성능 및 품질확인이 불충분할 경우, 해당시험을 공인시험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중략) ⋮ ③ 상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업체가 제출한 성적서의 신뢰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공무원은 공인시험기간에 시험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6조(납품지체 (예상) 통보) 계약상대자는 불량발생, 수입지연 등의 사유로 계획된 생산 일정이 지켜지지 않아 납기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사유를 명시하여 조달품질원장에게 통보하고, 담당공무원은 납품지체(예상)통보서를 작성하여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제32조(선납후검) ① 군의 긴급소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품질원장의 제품 합격 판정 이전에 납품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납품 기간 내에 확인할 수 없는 시험항목 등에 대한 사후 제품확인감사를 위해 시료 채취 후 납품 조치한다. ⋮ (후략) ⋮	경제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형상관리부서(방위사업청, 각 군)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표준화 업무지침」에 따라 형상관리부서의 규격완화 또는 면제 처리 결과에 따를 수 있으며, 계약서 또는 계약 특수조건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 해당 조건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후략) ⋮ 제23조(외부기관 시험의뢰) ① 계약상대자는 자체 품질확인 시 자체 시설 또는 인력으로 제품의 성능 및 품질확인이 불충분할 경우, 해당시험을 공인시험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이화학시험은 공인시험기관 등 외부기관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중략) ⋮ ③ 상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업체가 제출한 성적서의 신뢰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공무원은 공인시험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6조(납품지체 (예상) 통보) 계약상대자는 불량발생, 수입지연 등의 사유로 계획된 생산 일정이 지켜지지 않아 납기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사유를 명시한 납품지체(예상)통보서를 작성하여 조달품질원장과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제32조(선납후검) ① 군의 긴급소요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조달품질원장의 제품 합격 판정 이전에 납품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납품 기간 내에 확인할 수 없는 시험항목 등에 대한 사후 제품확인감사를 위해 시료 채취 후 납품 조치한다. ⋮ (후략) ⋮
---	---